

#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월 31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년 1월 16일

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1. 31.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)

### □ 제안이유

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#### 가. 시설개요

##### ○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종사자수	정원	개관일
강서 청소년회관	공항대로42길 23-19	1,607.44㎡ (지하1층, 지상3층)	14명	350명	1993. 5. 22.

※ 주요시설: 청소년아지트, 스마트체육관,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

- 위탁사무내용: 강서청소년회관 관리·운영 전반 등
-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5년 (2024. 5. 1. ~ 2029. 4. 30.)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경쟁모집
- 소요예산: 5,703,392천원(국비 75,034천원 사비 30,000천원 구비 5,598,358천원)

#### 나. 추진일정

- 2024년 3월: 민간위탁 운영체 공개모집 공고
- 2024년 4월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
- 2024년 4월: 협약 체결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동의안은 강서청소년회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30일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,<sup>1)</sup>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#### 1) 위탁 내용

구분	위탁기간	위탁기관	비 고
1	2019. 5. 9. ~ 2024. 4. 30.	(사)흥사단	재위탁

-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<sup>2)</sup>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강서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의 교육, 문화,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
-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의 안전성, 공공성,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,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정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
- 기존 법인에서 장기간 수탁운영 했던 만큼 신규 위탁기관이 선정될 시 철저한 인계·인수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수탁기관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청소년단체”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생략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**□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**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**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